

대구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3가단150089(본소), 2023가단157417(반소) 판결  
[청구이의 · 매매대금]

---

## 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A

피고(반소원고)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

담당변호사 김승규

변 론 종 결 2024. 9. 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## 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의 원고(반소피고)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60605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
3.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5.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.

반소: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에게 119,597,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6. 2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사이에, 원고가 2017. 6. 16. 피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전 444평 및 D 전 630평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을 매매대금 429,600,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서'라 한다)가 작성되었다.

나. 2017. 6. 20.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. 6. 16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피고는 2018. 12. 3.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60605호로 '피고가 2017. 6. 16.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9,600,000원에 매도하고, 원고로부터 2017. 6. 20. 140,540,000원, 2018. 1. 17. 80,000,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, 나머지 잔금 30,000,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잔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'는 청구원인으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9. 3. 14. 위 법원으로부터 '원고는 피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, 2019. 4. 5.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확정판결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2020. 2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호증, 을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,

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당사자들의 주장

### 가. 원고

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채무는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었는데, 원고가 2020. 2. 10. 그 중 2,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고, 같은 날 피고는 원고를 만나 나머지 잔금 및 지연손해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.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.

### 나. 피고

원고가 2,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맞으나, 원고에 대해 나머지 판결 기재 채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없고, 위 2,000만 원을 비용, 이자, 원본 순서로 충당하면 아직 원금 15,299,180원과 이에 대한 2020. 2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3,000만 원에 대한 청구에 따른 판결인데, 피고는 위 금액을 제외하고도 원고로부터 119,597,237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반소로써 나머지 매매대금 119,597,2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## 3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과 을 제12호증의 기재,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3억 원임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429,600,000원으로 하는 속칭 업계약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동석하였다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와 증인 E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,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7. 6. 20. 피고에게 142,550,090원을 지급하고,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7,452,673원을 피고 대신 상환하였으며, 2018. 1. 17.

피고에게 추가로 80,000,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80,002,763원(= 142,550,090원 + 57,452,673원 + 80,000,000원)을 지급하였던 점, ③ 피고의 조카 H는 I의 피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“씨 오기 전에 피고 소유의 청도 복숭아 땅(이 사건 토지)이 있었는데, 그것을 판매하면서 피고가 돈을 다 못받았습니다. 그게 1억 2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, 저와 저의 아내가 중간에 나서서 1억을 받게 해주었습니다. (중략) 그 청도 복숭아 땅 판매대금 중 2천만 원 잔금이 남아 있었는데, 그것을 I가 어떻게 승소를 해서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.”라고 진술하였던 점, ④ 이 사건 확정판결 후 원고는 2020. 2. 10.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2,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, 이후 피고의 I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기록을 검토하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을 알게 되어 2023. 9. 22.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3년 7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 중 2,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급을 구하였다거나 강제집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, ⑤ 증인 E은 피고가 2020. 2. 10. 원고로부터 2,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 후 원고가 2020. 2. 10. 피고에게 2,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,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판결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2020. 2. 10. 2,000만 원의 변제 및 나머지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,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.

#### **4.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**

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기하여 이 사건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.

가.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,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(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).

나.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60605호로 ‘피고가 2017. 6. 16.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9,600,000원에 매도하고, 원고로부터 2017. 6. 20. 140,540,000원, 2018. 1. 17. 80,000,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, 나머지 잔금 30,000,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잔금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’는 청구원인으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, 2019. 3. 14. 위 법원으로부터 ‘원고는 피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2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, 2019. 4. 5.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429,600,000원이고,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7. 6. 20. 140,540,000원 및 2018. 1. 17. 80,000,000원뿐임을 밝혔으므로 잔금으로 구한 30,000,000원은 그 중 일부청구임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,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제기 전인 2017. 6. 20.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57,452,673원을 피고 대신 상환함으로써 그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고, 2017. 6. 20.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위 청구원인 기재와 달리 142,550,090원에 이른다는 것인바, 앞서 본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60605호 매매대금 사건의 소장 기재 청구원인 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,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써 비로소 선행소송의 청구가 소송물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그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잔부 청구를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.

## 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명선